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18호 2011. 4. 1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91호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09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2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1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84호선)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 ----- 2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2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3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29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3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4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38호 신조 공인 공고 -----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46호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 4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50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4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총무과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3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총무과란의 제3호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구는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구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3. 구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조성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시책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구는 사업자, 구민 및 각종 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절약 등 목표 설정)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제1항과 관련된 녹색건축물을 공공시설물에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지원
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지원

제1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는 구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양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민대표, 여성 등에 대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91호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5조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표창 추천의 경우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구 의회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 ④ 단체 및 구민에 대한 포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포상통제)”를 “(포상협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를 “총무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장급”을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년차분”을 “1년차의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팀 확	당 장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당 확인	포상금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 조 :

발 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 첨부 : 1.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3. 포상금지급신청서, 숨은세원발굴내역(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부표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신청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 비고란에 포상금지급 적용기준조항 등을 기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다음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실비지급)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개발부담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9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0.5% 이상으로”를 “0.5%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1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8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중로2류184호선, 사업명:중로2-184호선 도로 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4.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2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2류184호선)
 【명칭】 중로2-184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182m, B = 1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3월 ~ 201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계	계획내	계획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내용	
합계				35,598.5	3,982.7	3,291.3	691.4						
1	경서동	154-9	도	63.0	63.0		63.0	인천시					
2	경서동	154-10	도	174.0	174.0	174.0		인천시					
3	경서동	154-14	도	68.0	68.0	54.1	13.9	인천시					
4	경서동	208-1	전	29.0	29.0	29.0		인천시 서구					
5	경서동	209	전	122.0	1.6		1.6	인천시 서구					
6	경서동	209-2	전	580.0	73.0	73.0		인천시 서구					
7	경서동	388	도	197.0	69.2	69.2		건설부					
8	경서동	720-3	대	6,900.4	278.8		278.8	(주)신태진 외 1	인천 서구 경서동 177-1				
9	경서동	726-2	대	866.5	36.5		36.5	(주)신태진	인천 서구 경서동 177-1				
10	경서동	726-4	대	379.2	0.2		0.2	삼광기 외 1인	인천 남구 주안동 926-5				
11	경서동	726-5	대	349.8	27.5		27.5	(주)신태진	인천 서구 경서동 177-1				
12	경서동	737-4	대	318.5	1.5		1.5	정구송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9				
13	경서동	737-5	대	513.2	12.9		12.9	배영섭	인천 북구 경서동 208-1				
14	경서동	774	도	8,853.7	2,059.6	2,059.6		인천시 서구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계	계획내	계획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내용	
15	경서동	787	도	2,049.2	14.0		14.0	인천시 서구					
16	경서동	산120-3	임	354.0	86.8		86.8	김태진	일본국 오오사끼후 센난시다루이 3 조메 1-32				
17	경서동	산120-10	임	43.0	17.4	17.4		인천시 서구					
18	경서동	산122	임	12,835.0	66.7		66.7	(주)신태진	인천 서구 경서동 177-1				
19	경서동	산122-5	임	903.0	508.8	420.8	88.0	(주)신태진	인천 서구 경서동 177-1				법면부
					394.2	394.2							본선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 04.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및 범위

구분	명칭	위치	범위	면적(m ²)	지정목적	등록일
1	중앙시장	가정동 502번지 일대	직선거리 500M이내	8,042.6	전통시장 (인정시장)	06.03.15
2	강남시장	석남동 454-19번지 일대	직선거리 500M이내	14,985	전통시장 (인정시장)	05.12.15
3	거북시장	석남동 548번지 일대	직선거리 500M이내	7,126.8	전통시장 (인정시장)	05.12.22
4	신거북시장	석남동 540-15번지 일대	직선거리 500M이내	10,314	전통시장 (인정시장)	05.08.17
5	가좌시장	가좌동 30번지 일대	직선거리 500M이내	9,576	전통시장 (인정시장)	06.05.16
6	축산물시장	가좌동 477-58번지 일대	직선거리 500M이내	35,047.7	전통시장 (인정시장)	05.11.17

※ 전통시장 위치(지도) : [별첨1]

3. 전통산업보존구역 관련 도서열람방법

- 방문열람 : 구청 경제지원과에 비치(☎560-4435)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 공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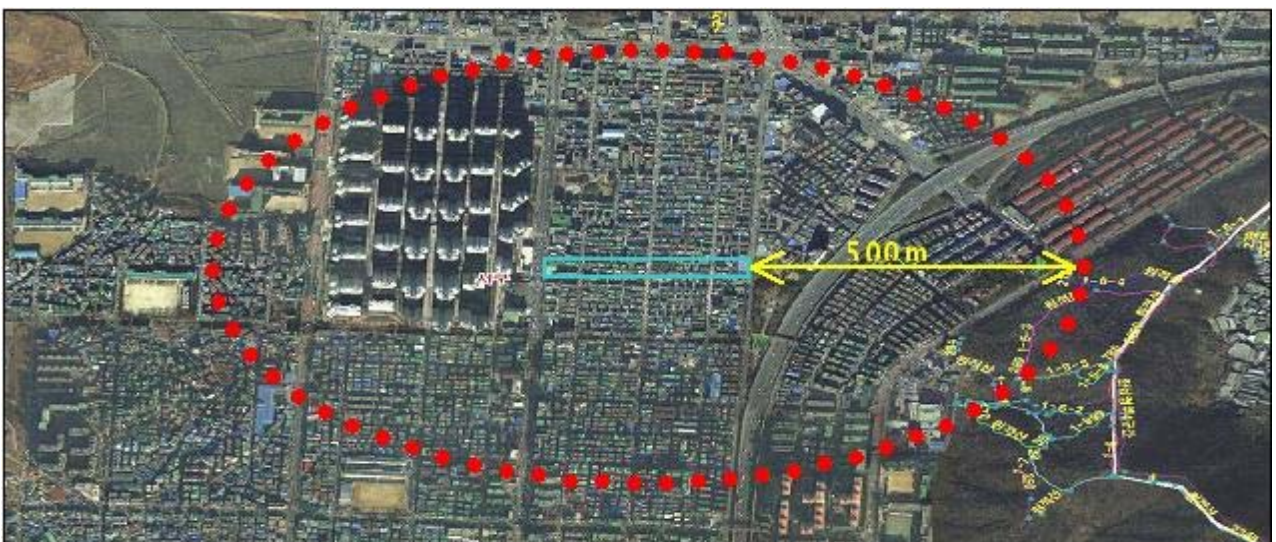
[별첨 1]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범위위치 및 면적 -

1) 중당시장

- 중당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해당지번	가정동 502-11, -37, -9, -10, -14, -15, 504-7, -11, 505, 505-1, 505-15, -16, -29, -30, -36, 506, 506-11, -12, -13, -18, -19, -20, -22, 21, -22, -1, -38, 501-31, -23, -24, -25, -26, -36, -34, -18, -14, -35, 499-19, -20, -13, -11, -14, 509, 509-5, -6, -17, 510, 510-16, 510-17, 576, 577				
경계	동	서	남	북	면적(km ²)
	가정동 557-9	신현북초교전	한전사원아파트	이나지길	1.17



2) 강남시장

- 강남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해당지번	석남동 450-4, 451-21, -22, -23, -24, -25, -26, -27, -39, -40, -41, 42, -43, -44, 452, -1, -2, -3, -4 ~ -9, -10, -11~16, -17, -18~25, -26, -27, 28, 29, 30~37, 38, 39, 453-1, 9, 10, 11, 12, 19, 21, 454, -1, 5, 6~21, 455, -7, 8, 11, 12, 13, 14, 18~22, 596				
경계	동	서	남	북	면적(km ²)
	서달산길	동남아파트경계	길주로	하늘채아파트경계	1.15



3) 신거북시장 및 거북시장

- 신거북시장 및 거북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500미터 이내

해당지번	신거북시장	석남동 540-15, -28, 541-15, -30, -16, -18, -27, -28, 549-8, -9, -10, 572, -1, 571, 571-2, 574, -1, -2, -3, 575, 576, 576-47, -48, -49, 575-45, 619, 520, 618, 572-25, 575-45			
	거북시장	석남동 548, 548-1(도), 2, 3, 4(도), 5, 6, 7(차), 8, 9, 10, 11, 12(도), 13, 14, 15, 16, 17(도), 19, 20~27, 28(도), 29			
경계	동	서	남	북	면적(km ²)
	가정동 557-9	신현북초교전	한전사원아파트	이나지길	1.19



4) 가좌시장

- 가좌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해당지번	가좌동 30-22, 28, 29, 30, 31, 33, 34, 35, 36,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3, 54, 55, 56, 67, 77, 108				
경계	동	서	남	북	면적(km ²)
	가좌동 산151	경인고속도로 한일아파트	가좌주공2단지	석남동 산17-1 (석남3동 경계)	1.16



5) 축산물시장

- 축산물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해당지번	가좌동 473-6, 7, 9, 475-4~8, 476-6, 12, 15, 477-3, 4, 5, 480, -1, 2, 3, 5, 7, 17, 19, 20, 21, 481, -1, 4, 5, 9, 506, 516, 517, 518				
경계	동	서	남	북	면적(km ²)
	여우재길	가좌동 542-7번지	중3-12호선	가좌동 399 (로얄타운)	1.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2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물건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484-2번지 외 12필지
5. 열람기간 : 2011. 4. 12. ~ 2011. 4. 26.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7.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1. 4. 1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수용재결 대상자 명단

연번	물 건 지		소유자	비고
	동	지번		
1	연희동	484-2	김일곤	
		481-2		
2	연희동	404-1	김영수	
3	연희동	491-7	이춘재	
4	연희동	474	임원재	
		473-1		
		386		
5	연희동	480	조정임	
6	연희동	372	장기호	
		365-4		
		425		
		499		
7	연희동	187-2	최정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29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고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 도 강제처리 됨)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폐차)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2조(20-150만원 범칙금)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 또한 동법제81조 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 하게됩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1년 04월 14일 ~ 2011년 05월 13일

나. 대상차량 : 따로붙임(서울73라3499외 28건)

다. 강제(폐차)처리시기 : 2011년 05월 13일 이후

라. 강제(폐차)처리장소 : 관내 폐차장

마.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

바.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 032-560-4962)

붙 임 :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내역 .끝.

2011년 04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143	서울73라 3499	이스타나	원종빈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117	삼성캐피탈(주),성북구청[청소환경,환경위생,세무2과,경제환경,교통행정],덕양구청[산업교통],일산서구청[사회교회],양천경찰서[경비교통],강서구청[주차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강북지사[자격징수],삼성카드(주),일산동구청[사회교통,건설교통],국민연금관리공단성북지사[직장고객],일산경찰서[경비교통],근로복지서울북부지사[징수],마포구청[교통지도],양천구청[세무2과],계양구청[교통행정],인천서구청[교통행정],인천중구청[교통행정].
144	47주 8570	무쏘	조병규	인천 서구 불로동 179번지5/8 동부아파트 108동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파주시청[교통행정],일산서구청[사회교통],LG카드(주)
145	88나 9678	코란도밴	차경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남양주차량관리사업소[차량관리]인천남부경찰서[교통],남동구청[주차관리],인천서구청[세무,환경보전,교통행정,교통민원],부평구청[주차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징수부],광명시청[지도민원],팔달구청[세무,환경위생].
146	인천35라 6055	세피아 II	이범항	인천 계양구 병방동 86번지 1 호55/2 대왕빌라 2동	부평구청[교행],계양구청[세무,교행],계양경찰서[교통],강북구청[교지],인천동구청[세무],국민건강보험공단계양지사[징급],동작구청[교지],영등포구청[교통지도],양천구청[교통지도], 박노호, 이종국.
147	인천33모 5966	세피아	이승훈	인천 부평구 부평동 744번지 1	부평구청[시세,교행,세무,환경위생],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교지],부평경찰서[교통],원미구청[건설],연수구청[교행],소사구청[경제교통],국민건강보험공단부평지사[부과징수],강남구청[교통지도],성북구청[교통지도],강서구청[주차관리],인천서구청[교통행정].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148	53무 2759	쏘나타	조병국(조 은상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성동구청[교통지도], 구리시청 [교통], 동대문구청[교통지도], 서 초구청[주차관리], 중랑경찰서 [경비교통], 청주시흥덕구청[세 무], 당진군청[교통], 마포구청[교 통지도], 강서구청[주차관리], 강 남구청[교통지도], 노원구청[교 통지도], 청주시청[환경], 강동구 청[교통지도], 성북구청[교통지 도].
149	전북82가 7584	포터	김종완	전북 익산시 금강동 255번지	익산경찰서[교통], 익산시청[환 경,세무], 청주흥덕구청[경사], 부 평구청[교통행정], 인천서구청 [교통행정].
153	05루 8316	쏘나타	안효실(성 원자동 차)*상품 용*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번지	대전서구청[교통관리,교통기획], 현대캐피탈(주), 대전중구청[세무 과,환경]인천서구청[교통행정], 대전차량등록사업[차등], 부평구 청[주차관리], 서대문구청[교통 관리]
155	서울54로 1373	스타렉스	강일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9	(주)하나은행, 대우캐피탈(주), 노원구 청[세이,환경산업,교행,징수], 강 동구청[교통,징수], 서울중구청 [교지], 노원경찰서장[교통], 계양 구청[교통행정], 금천구청[교통 지도], 관악구청[교통지도], 의정 부시청[교통지도], LG카드(주).
163	인천32가 5059	테라칸	노정옥	인천 중구 을왕동	인천중부경찰서[교통], 국민건강 보험공단인천중부지사[자격징 수], 인천서구청[교통], 인천중구 청[교행,환경위생], 인천시청[교 통관리,세정]용유출장소[용출].
164	75부 7856	프레지오	김동민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7	부평구청[세무,교통행정,환경보 전], 인천남구청[교통민원], 삼산 경찰서[경비교통].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165	인천80라 8182	포터	양승화	인천 남구 용현동 570번지 12	인천남구청[교통,환경위생,환경 보전,교통민원],남동구청[교통], 인천중부경찰서[교통],연수구청 [지교],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공단],인천시청[교통관리].
166	01거 3494	마티즈	김구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	진천경찰서[교통],진천군청[지 역경제],성북구청[교관],동대문 구청[교통지도,세무2과],경기광 주시청[교통행정],구로구청[교 통지도,주차관리],중랑구청[교통 지도,세무2과],강남구청[교통지 도],중랑경찰서[경비교통],서대 문구청[세무2과,환경],광진구청 [주차관리],성남시분당구청[경 제교통],서울중앙지방법원[2008 하단9742],송파구청[세무2과,교 행,환경,자동차관리],강동구청 [교통지도].
167	90수 2933	타우너	김영준	인천 남구 도화동 93	관악구청[교지],국민건강보험공 단계양지사[자격징수],계양구청 [세무,교통행정],인천서구청[세 무,환경보전],안양시만안구청[건 설교통],부평구청[교통행정,세 무],강남구청[세무관리],중랑구 청[청소행정].
168	경기32도 4312	엑센트	김은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6	현대캐피탈(주),덕양구청[세무,산 업교통,환경청소],고양시차량등 록사업소[차량],은평구청[교통 지도],고양경찰서[경비교통],인 천시청[교통관리],인천남구청 [교통],국민건강보험공단고양지 사[부과징수],LG카드(주).
171	경기51노 3857	아반떼	김인선	경기 시흥시 대야동 552번지 1호 늘푸른주택	용산구청[교통지도],시흥경찰서 [교통],시흥시청[교통지도,세 정],인천중구청[교통행정],남동 구청[교통],시흥시차량등록사업 소[차량책임],인천서구청[교통 행정],원미구청[경제교통],부천 시청[도시미관],국민건강보험공 단인천서부지사[징수],현대캐피 탈(주).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173	인천33마 9702	무쏘	정현무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번지 주공아파트 1109동	삼성캐피탈(주),현대캐피탈(주),남동경찰서[교통],강남구청[교지],김포시청[교통],남동구청[세무,환위,차량,교통,환경],영등포구청[교지],인천서구청[세무,교통행정],LG카드(주)
174	09나 8650	프라이드	BURONO V JAMSHE D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	원주시청[교통행정],원주경찰서[경비교통],한국도로공사경기지역본부[도로영입],일산동구청[도시미관].
175	강원33가 1658	라노스	장봉수	강원 춘천시 약사동 43번지	대우캐피탈(주),춘천시청[교통,세무],춘천경찰서[교통],춘천동부새마을금고,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강남구청[교통지도],원미구청[건설,경제교통]계양구청[교통행정].
180	01노 7342	엑스트렉	박진희(상 품용)	인천 남구 주안동 1412번지	인천남구청[교통민원,환경보전]인천서부경찰서[경비교통],남동구청[교통행정],인천서구청[세무],국민연금공단인천지사[고객지원],은평구청[교통지도],부천시청[도시미고나과],현대캐피탈(주),효성캐피탈(주).
185	07부7520	스타렉스	이기홍	인천 동구 금곡동 54-	인천동구청[환경위생,환경보전,교통,세무],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중부지사[징수],현대캐피탈(주),인천중부경찰서[경비교통].
187	미상	오토바이	미상	미상	
188	인천82가 5390	포터	건호산업 (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47	계양구청[환인,교행,세무,환위],송파구청[교통,교지],강남구청[교지],마포구청[교지],계양경찰서[교통],청주시상당구청[경사],구로구청[교통지도],부평구청[교통행정],인천남구청[교통],소사구청[경제교통],서울중구청[교통지도],원미구청[경제교통].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189	인천30러 4727	프린스	(주)대흥 수지 T.503- 2082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0	인천지방공단의료조합[징수],부 평구청[지교,세무,교행,차량,환 경위생,환경보전],부평경찰서[교 통],인천시청[교통관리].
192	79어 2869	갤로퍼	정금이	경남 김해시 대성동 69-1호 성신리젠시빌라	김해시차량등록사업[차량등록],김 해시청[환경보호,세무],계양구청 [교통행정],김해중부경찰서[경비교 통],국민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징 수부],원미구청[도시건축],동작구 청[교통지도],인천남구청[교통민 원].
201	경기87거 3221	SV110	(주)영진 텔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	영등포구청[교지],구로구청[교 행],고양경찰서[경비교통],고양 시청[환경보호],덕양구청[세무, 환경청소],부천시청[교지,교통관 리],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차 량]남동구청[교통,주차관리],서 울중구청[교통지도],관악구청 [교통지도],인천남구청[교통민 원],서대문구청[교통지도].
202	인천83가 6379	타운너	한인홍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362번 지 102호2/2 정원빌리지	권두현
203	인천31더 2009	라노스	양승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70	인천남구청[교통],영주시청[도 교],연수구청[지교],인천중부경 찰서[경비교통],남동구청[주차 관리],대우캐피탈(주).
205	번호미상	오토바이	미상	미상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3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국토해양부(대행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굴포천방수로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수용재결 대상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08번지
4. 열람기간 : 2011. 4. 15. ~ 2011. 4. 29.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6.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1. 4. 1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수용재결 대상자 명단

구분	물건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1	왕길동 64-308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일	
2	왕길동 64-308	공정섭		
3	왕길동 64-308	김상업		
4	왕길동 64-308	신연주		
5	왕길동 64-308	(주)생보부동산신탁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38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인천광역시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부의원 호선에 따른 공인 신조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1년 4월 26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 격(cm)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2.1×2.1		인천광역시서구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부의원 호선에 따른 공인 신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46호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우리 구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1. 4.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3.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

동 명	종전 지적공부(폐쇄)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확정)			
	지 번	지목	면적(㎡)	지적공부	지 번	지목	면적(㎡)	지적공부
당하동	2-9외 415필		367,947	토지대장:894매 임야대장:176매 지적도:894매 임야도:176매	1019-1외 208필		370,166.7	토지대장 : 710매 경계점좌표 등록부 : 710매 지적도 : 710매
원당동	559-1외 653필		582,257		795-1외 500필		578,314.2	
	“폐쇄지번	불임	참조 “		“확정지번	불임	참조 “	
	계	1070	950,204		계	710	948,480.9	360필지 감소 1,723㎡ 감소

4. 공고기간 : 2011. 4. 15. ~ 2011. 4. 22. (7일간)
5.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6. 문의전화 : 032-560-4822~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501호선)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2류501호선, 사업명:왕길동 소2-50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1. 4.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29-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2류 501호선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면 적 : 78.0㎡
 - 규 모
 - L = 9.6m, B = 8.0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9. 09월 ~ 2011. 4. 01.